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5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입안기준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·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제3호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
- 나. 제8조제2항의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규정을 법령과 일치
- 다. 제23조제2항의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의 반환규정 마련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10. 04. ~ 10. 25. (제출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11. 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
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과오납된 수수료는
반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)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, 사용자재,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</u></p>	<p>제4조(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) 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8조(주민협약회의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주민협약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8조(주민협약회의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 <u>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.</u>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수수료) ① (생략)</p>	<p>제23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카드,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③ (생략)

② -----

----- 과오
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도시안전과 광고물팀 정우열 (☎ 3153-9459)